

2022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추가모집(2차)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있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05.1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추가모집 개요

☐ 추가모집 사유

- 1개 창업지원기관의 창업팀 협약 시, 중도포기에 따른 재공고

☐ 추가 모집 창업지원기관

기관명	모집분야	모집규모	모집대상	문의처/e-mail
제주페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 디지털, 지역활성화	1팀 내외	-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연계 및 기업간 프로젝트 협업형 협동조합창업	064-901-8004 coop@jejuzip.kr

<표1>

□ 추진 방향 및 특징

- 2022년 청년 등 협동조합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창업팀 모집
 - 분야별 역량있는 창업팀을 모집하여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맞춤형 교육·멘토링 운영

□ (신청자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을 신규 설립·조직변경하려는 자

구분	세부 내용
신규설립	○ (사회적)협동조합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 - 협동조합 신규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팀원이 구성되어야 함
연합회	○ (일반·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 창업팀 모집 공고일 당시 설립된 최소 3개소 이상의 팀원(협동조합)이 구성되어야 함
조직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 (기준요건) 최소 3인 이상으로 팀원 구성 및 참여*

- * 사업 완료 전까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신규설립 시 5명 이상) 구성
- ** 조직변경의 경우 조직변경을 희망하는 법인 1개소가 신청하며, 그 외 팀원을 구성하지 않음

□ (선정방침)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실현 의지, 협동조합 이해도, 사업모델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선정

□ (제외대상)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신청제한

-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창업팀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 창업팀 결격(신청·선정취소) 사유 >

진흥원은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선정 당시 팀원 중 과거 동일사업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서, 사업화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6.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7. 소관부처,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법인 설립 단계별 교육, 멘토링 등 협동조합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협동조합형 창업 프로그램)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사업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 협동조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

1 조직화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는
창업팀(발기인모임)
만들기 지원

2 사업설계

보유·연계 가능
자원 및 조합원
역량을 고려한
사업설계 지원

3 법인설립

정관·사업계획서 등
작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등 행정지원

- (사업비 지원) 사업모델 구축 및 법인설립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창업팀 사업비 지원

- (기본사업비) 창업팀 당 기본 사업비 5백만원 지원

- * 사업비는 1회 이상 분할지급이 원칙으로, 일시에 지급되지 않음
- ** 창업팀 대표에게 지급되며,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 ***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 집행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정산하되,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안내하는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인정액 등 발생 시 환수조치함

- (추가사업비) 중간평가를 통해 창업팀 등급 확정 및 추가 사업비 지급('22.8월 예정)

< 창업팀 평가결과별 추가사업비 지급 >

창업팀 등급	기본사업비	추가사업비(예시)
우수	5백만원	2백만원 + α^*
양호		1.5백만원
미흡		1백만원

* 우수창업팀별 추가사업비 지급액은 중간평가 시점에 확정

□ 지원 규모

- 창업지원기관(2개소)에서 총 6팀 선발 예정

- * 기관별 중도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우선 선발을 위한 예비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팀은 창업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

□ 선정 심사 우대(신규설립 한정)

- ① 청년창업팀(가점 3점): 신청 당시 청년(만 39세 이하)이 대표인 창업팀 또는 주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팀

- ②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희망 창업팀(가점 3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IT 기반 적정기술·기술공여 등 과학기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모델 ▪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재활용 등 협동조합 모델 |
|--|

- ③ 권역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별첨2]으로부터 협동조합 설립전 교육을 이수한 창업팀(가점 1점)

- * (증빙) 지원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서(확인서 등)를 받아 기관별 이메일 별도제출

□ 주의사항

-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사업참여기간 동안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창업팀 선정 후 팀원이 「협동조합기본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5.18.(수) ~ 5. 25.(수) 16:00까지

- *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분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작성 방법 및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관련 문의 권고

□ 창업팀 신청

- (이메일 신청) 공고문의 신청서 서식을 활용
 - 연합회 설립 및 조직변경은 별도로 아래 서류를 개별 창업지원 기관 e-mail로 추가 제출

구분	제출서류
연합회	○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팀원 전원의 협동조합 신고증 등 법인이 창업팀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조직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가장 최근 재무제표(결격사유(완전자본잠식상태 등) 확인용)

- * 연합회, 조직변경의 경우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상기 서류까지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유효하므로 유의

□ 접수 시 유의사항

- 기획하는 사업 내용이 창업지원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 후 접수 권고
 - 창업지원기관의 분야와 맞지 않은 주제 신청 시 창업지원 기관은 신청팀에게 적합한 기관으로 재신청을 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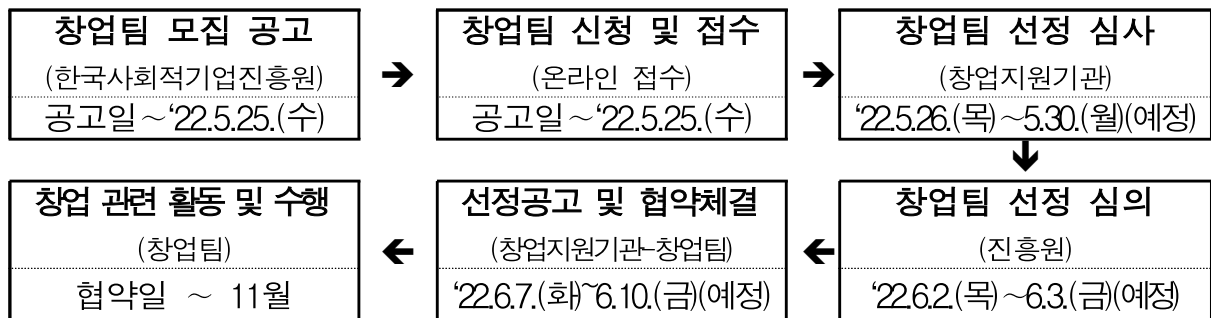
- 창업지원기관은 제출한 신청서류만으로 확인 불가한 자료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추가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존 신청서 접수는 유효함

4

창업팀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및 일정



* 창업지원기관별 심사 일정은 창업지원기관에서 개별 통보

※ 코로나-19로 인하여 창업팀 선정 심사 시, 대면평가를 대체하여 비대면 평가(전화 혹은 화상회의 평가 등) 실시할 수 있음

5

문의처

□ 지원 내용, 참가 요건 및 접수 절차, 사업설명회 등

- 각 창업지원기관 연락처로 문의([표1 참조](#))

□ 사업 전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5~6)

별첨1
2022년 창업팀 사업비 회계기준(요약)
제13조 (창업팀 사업비 구성)

비목	활용 항목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도서 등 구입, 인쇄·복사·스캔, 보험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서비스 구입 - 우편료, 특허출원비, 인증획득비,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논문 이용료 등 각종 행정비용 - 협동조합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전시회 참가비
위촉 수당	- 강사, 멘토, 연구진, 자문위원 등 전문가(개인) 위촉 시 지급하는 수당
임차료	- 신규 사무공간 및 장비 등 임차, 리스 - 교육, 워크숍, 행사 등 장소 임차(숙박비 제외) - 전세버스 임차
여비	- 창업팀원의 국내 타 권역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실비)
사업 추진비	- 창업팀 외부 인원(창업팀원 외의 자)과의 식사 및 다과 - 창업팀이 주최·주관하며, 창업팀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의 식사 및 다과 * 사업비 총액의 20% 이하로 편성
외주 용역비	- 컨설팅계약 대금 - 법무, SW 등 전문분야 위탁용역 대금
자산 취득비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산성 기자재 구입 경비 * 사업비 총액의 40% 이하로 편성

제14조 (일반수용비) 창업팀 사업 수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

일반수용비 기준	1.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 및 유인비 /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수수료 등 ○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인쇄,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 공공요금, 우편송금 수수료 등 ○ 홍보 등에 안내물 제작, 광고 등에 필요한 비용
	2. 우편료, 특허출원비, 인증획득비,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논문이용료 등 각종 행정비용, 협동조합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3.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등

- ① 일반수용비로 물품 구매대금(사무용품, 인쇄, 홍보물 제작, 도서구입 등) 지출 시 **물품 사진 촬영 및 검수증 작성**
- ② 창업팀 사업비 보증을 위해 창업팀 대표에게 교부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는 창업팀 사업비(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가능
- ③ 인증획득비, 지적재산권 확보, 법인설립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 비용**

◀ 행정 비용 관련 ▶

- **(인증획득비)** 인증획득비는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 함. 또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 창업팀은 해당 증빙자료 사본을 창업지원기관에 제출
 1.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2.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 **(지식재산권 확보비용)**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제 소요 비용을 지급
 1.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2.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3.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의 경우만 가능(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 가능)
-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공과금(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 비용

- ④ 창업팀이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품 제작, 샘플 구입비 등 소모성 재료비
- ⑤ 온라인쇼핑 입점비, 전시회 참가 등 사업화과정에서 홍보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제작 등 비용
- ⑥ 외부 교육기관이 개최하는 유료교육 참가 시 지출되는 교육비(수강료)

제15조 (위촉수당) 창업팀이 개별적으로 강사나 멘토, 연구진, 자문위원 등 전문가(개인)를 위촉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별표 제1호](#)]를 기준으로 지급

※ 유의사항

- 창업지원기관 운영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참여인력은 위촉수당 지급 불가
 - * 창업지원기관 운영비로 편성해야 함
- 창업팀이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팀이 기타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등 과업 수행 어려울 시에 한해 창업지원기관이 업무대행 가능
 - * 창업팀 위임장 필요

제16조 (임차료) 창업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장소 섭외, 전세버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장 임차료

- 창업팀이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공간을 사업장 용도로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규 임차 건**에 한해 비용 지출할 수 있음
 - * (집행한도) 사업장 임차료는 **창업팀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편성 가능
 - * (집행기간) 협약기간 이내 청구·집행 건에 한해 인정 가능

제17조 (여비) 창업팀 구성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외 출장에 대한 여비

- ① **(국내여비)** 창업팀 구성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숙박비로 한정(일비 제외)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제3호](#)] 참조

② (국외여비) 창업팀 구성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숙박비로 한정(일비 제외)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제4호] 참조

※ 국외출장에 대한 여비

- 사업구역이 해외를 포함하는 창업팀에 한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여비 집행 가능
- 국외출장은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외출장 14일 이전에 국외출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창업팀 구성원의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로 한정(일비 제외)하며, 실제 지출금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제18조 (사업추진비) 창업팀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인원(창업팀 구성원 외의 자)과 회의 진행 및 행사 개최 시 소요되는 식대 및 다과 비용으로, 1일 기준 1인 30,000원 이내로 예산 편성 및 사용가능 (사업비의 20%이내 편성)

제19조 (외주용역비) 사업 수행에 있어 창업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분야 대행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창업지원기관은 외주용역 기간 내 필요시 중간점검 진행 가능
2. 외주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함
3.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단, 지원 중단 결정 창업팀의 경우 용역 중단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가능함
4. 창업팀이 외주용역사에 선금 지급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5. 외주용역 대금 지출 시 검수증 작성

※ 외주용역비 주요 불인정사례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인정
(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 최종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미제출 또는 불충분 시 불인정
- 과도한 용역 대금 책정 후 기업과 협의하여 일부금액 개인 취득하는 경우 불인정
및 제재 가능
- 용역업체가 계약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을 인정하여 용역 완료시 불인정
- 용역업체 과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결손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손
금액은 불인정

**제20조 (자산취득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자산성
격의 물품, 기자재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의 40%
이내 편성, 자부담금 편성 불가)**

※ 유의사항

- **가급적 자산 취득은 최소화**하고, 임대 혹은 임차 가능한 상품 혹은 서비스는
임차료 사용 권장
- 사업 수행에 있어 자산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운영계획서 및 견적서 등에
대해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 운영위원회 승인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단가 50만원 이하 건은 심의위원회 생략 가능(총괄책임자 승인, 기관
의견서 구비)
- 창업지원기관은 자산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창업팀 지원 종료 후 1년까지 자산
현황을 관리하며, 창업팀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자산취득 불가 품목

- 사무공간의 집기/가구 종류 구입 불가
-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구입 불가
- 컴퓨터(PC, 노트북 등) 구입 불가
- 이륜·사륜 등 자동차 종류 구입 불가
- 사무용·범용성 소프트웨어(MS-Office,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구입 불가
- * 단, 사업계획서 상 필요성이 높은 경우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구매 가능

【별표 제1호】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1.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강사 (1등급)	○ 전·현직 각급대학 총·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각급 단체·협회장 ○ 소양·정신강의 분야의 중견 전문강사로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
우대강사 (2등급)	○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각급 단체·협회에 속한 중견전문강사 ○ 그 밖에 당해분야 전문강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000원
일반강사 (3등급)	○ 각급 대학 전임강사 ○ 4급 이하 공무원 ○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000원
기타사항	○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2.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최소원고매수	지급기준 (매당)	지급액 최고한도
강의시간 2시간 이내	A4용지 2매	10,000원	4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이내	A4용지 4매	10,000원	8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초과	A4용지 5매	10,000원	120,000원
A4용지 작성기준	○ 프로그램 : 아래훈글 ○ 용지여백 : 상하 10mm, 좌우 20mm ○ 글자크기 : 12point ○ 줄 간 격 : 160%		
기타사항	○ 원고료는 기 인쇄된 내용을 복사·복제하거나 기 사용한 내용의 원고를 제출한 경우와 당해 교육훈련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원고에 대하여 50% 이상 수정·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별표 제2호】 강의확인서 및 수당지급 명세서 예시
 < 「강의확인서」 예시 >

<b style="color: blue;">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강의일시: 2022. 7. 1 14:00~16:00 (2시간) 강의주제: "협동조합의 정신" 강 사: 000 - 소속 및 직위 : 000 누리 대표 -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000 - 연락처 : 02-1234-5678 / 010-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000)
2022. 7. 1. (강사) 0 0 0 (서명)

< 「수당지급 명세서」 예시 >

○ 교육명 : 2022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팀빌딩 교육 (2021. 00. 00. 13:00~16:00)

성명	소속 기관 및 지위	주 소	주민등 록 번호	지급 액 (원)	공제액내 역		수령 액	은행명 및 입금 계좌	서명
					소득 세	주민 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진흥원은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 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제공일자가 포함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보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의 의무가 있거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 니다.		정보주체 서명	
[개인정보 처리] 본인은 심사수당 지급을 위 하여 성명, 소속 및 직위, 주 소, 은행계좌정보 등의 개인정 보를 <u>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기관명 혹은 창업팀)</u> 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를 <u>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창업지원기관명 혹은 창업팀)</u> 에 제공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원고료 지급명세서」 예시 >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59,400	54,000	5,400		
나 ⁰⁰	00정책현황 및 비전	30	27	405,000	35,640	32,400	3,240		농협 100-200-3456789
민 ⁰⁰	00협동조합 발전방안	20	18	270,000	23,760	21,600	2,160		국민 1234-5678910

【별표 제3호】 국내여비 지급 기준

□ 항목별 여비 지급 한도

구 분	교통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기준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석)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 여비 지급 원칙

1. 해당 출장명세를 증빙할 수 있는 [별지 제7호 서식] 출장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인정가능 증거서류의 범위
교통비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숙박비	1.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간이영수증* * 산간오지 등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없어 간이영수증 이외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출장기간·출장지·숙박일·실제 소요금액·업소명·업소 대표자·숙박업체 연락처·간영수증 제출 사유 등이 명기된 <u>확인서</u> 도 함께 제출

2.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일상적인 출·퇴근 및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여비는 불인정

① 교통비

1.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운행비(연료비,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지급
* 격오지 방문, 화물운반 등 자가용 승용차 사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인정

◀ 자가용 운임 계산 방법 ▶

- ❶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 ❷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naver에서 길찾기): 출발지-도착지입력
- ❸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❹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3.30	14.30	9.77

 -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 ❺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2.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항공운임 불인정

3. 택시 비용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등 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장애인카드 사본 등) 구비

② 숙박비

1. 실비 지급하되, 출장지역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 설정

③ 일비(창업지원기관 限)

1. 창업지원기관 소재지역(시·군 단위로, 자치구는 제외)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급

【별표 제4호】 국내여비 지급 기준

국 외 항 공 운 입 정 액 표

구 분	항공운임
창업팀	2등 정액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숙박비
창업팀	가	실비(상한액: 155)
	나	실비(상한액: 123)
	다	실비(상한액: 90)
	라	실비(상한액: 77)

비고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2.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3.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

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4.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5. 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첨2
2022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목록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se/coop)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3942 033-749-3920	gwse0524@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웅빌딩)	055-266-7970	moducoop@ 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se@ sebiz.or.kr coop@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41, 5층(상서동, 대구 YMCA 청소년회관)	053-956-5001	dg_secenter@ cne.or.kr dg_coopcenter@cne.or. kr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2-223-9914 044-867-9954	c-mail@ hanmail.net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1-517-0266	info@rise.or.kr coop@rise.or.kr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jifcoop@daum.net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주안동, 계림빌딩)	032-446-9492	inseca@ daum.net
전남	(사)전라남도 농촌종합지원센터	전남 나주시 우정로 72, 더클래스빌딩 B동 433호	061-335-0125	jrsco0@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jbs2019@ 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jejuser2015@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cnsecoop@gmail.com
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cbse@ hanmail.net